

등에 관한 규정

[2014.6.27.] [대통령령 제25404호, 2014.6.27., 일부개정]

개정이유

[일부개정]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일정 규모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입주자가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 수 있도록 화장실소음, 수리의 용이성, 조경·일조확보율 등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주택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1,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개정문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박근혜 (인)

2014년 6월 27일

국무총리 정홍원

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

○ 대통령령 제25404호
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
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주택법」 제2조·제21조·제21조의3·제21조의4·제21조의5"를 "「주택법」 제2조, 제21조,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5까지"로, "대지조성의 기준"을 "대지조성의 기준,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"로 한다.

제7장의 제목 "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"을 "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등"으로 한다.

제7장에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8조(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) 법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"란 1,000세대를 말한다.

제64조의2를 삭제한다.

제66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제58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: 2014년 6월 25일

부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